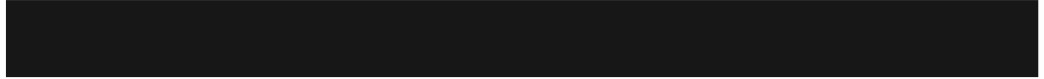


판 결

사 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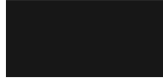
원고, 피항소인

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

담당변호사 조효동

피고, 항소인



제 1 심 판 결



변 론 종 결



판 결 선 고

주 문

1.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가. 피고는 원고에게 42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[redacted]부터 [redacted]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총비용(취하된 반소 부분 제외) 중 2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3.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